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기준 폐지에 맞추어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류 면세물품의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3. 21. ~ 4.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수량			비고
주류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로 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①·② (생략)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③----- ----- ----- -----.		
구분	수량		비고		
주류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로 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구분	수량		비고	
주류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로 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